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1. '통계등록부의 종류 등'(제2조의2) 신설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모집단 기본정보를 수록한 통계등록부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(법 제5조의3제1항)
- 통계등록부의 종류, 종류별 구축항목 및 구축방법 등의 위임 사항(법 제5조의3제2항, 제3항)에 대한 규정 필요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통계등록부 종류는 인구·가구 통계등록부 등 총 7종의 통계등록부 및 구축항목을 각각 규정하고, 그 외는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(제1항)
  - 통계등록부별 구축항목으로 성별, 연령, 국적, 가구주관계 등 통계등록부별 특성에 관한 기본정보를 각각 명시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민간자료로 정함(제3항)
-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\*을 매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(제4항)
  - \*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, 제공받은 행정자료 현황,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및 이용 현황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**활용도 제고를 통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지원 강화**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# 2. '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' 신설(제38조의2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하여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(법 제24조제3항 신설\*)
- \* 개정 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행정자료 요청가능
- 법에서 위임한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**통계작성지정기관의 범위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**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 필요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, 행정자료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**법17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 정함(제1항)**
-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(제2항, 제3항)
  -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관하여 규정한 **'행정자료 요청 및 제공'(영 제38조)을 준용하여 규정(제2항~제5항)**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청을 경유한 행정자료 요청 및 제공으로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통계작성 지원 확대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# 3. 행정자료 요청기관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화 신설(제39조의2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입수한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(이하 '정보보호조치')의 실효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하여 **사전 안전성 확보조치(법 제24조제6항)**를 하도록 의무화
- 법에서 위임한 사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물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 규정 필요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**기술적·물리적 조치 사항**으로
  - 행정자료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암호화 기술 적용, 침해사고 발생 대응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·변조방지, 보안프로그램 설치,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정보보호조치 사항 규정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확대에 대응한 사전 안전성 확보 조치로 행정자료의 안전성 강화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# 4. '통계작성기관의 통계등록부 자료의 요청과 제공' 신설(제45조의3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에서 위임한(법 제29조의3) **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절차·방법 및 범위**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등록부 자료 요청과 제공에 관한 사항은 **통계등록부 자료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**하여 물리적·기술적·절차적 보안조치가 구비된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(제3항)
  - 그 외 통계등록부 자료의 요청사항, 제공기간, 경비·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 제46조(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)를 준용하여 규정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등록부 자료의 요청 및 제공 절차 규정을 통한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통계작성 활성화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 5.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신청과 제공 방안 마련(제47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31조제1항에서 위임한 통계등록부 자료 이용자의 **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신청**에 관한 규정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은 시행령 **제47조(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)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**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

\* (前) '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' → (後) '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'

- 다만,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은 자료의 민감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물리적·기술적·절차적 보안조치가 구비된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수행하도록 규정(제4항)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의 신청과 제공 방안을 규정하여 통계등록부를 활용한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통계작성 활성화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 6. 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 방안 마련(제48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통계자료의 보호조치를 위한 규정(영 제48조)과 같이 **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 필요**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시 보호조치 규정(영 제48조)을 개정\*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보호 방안을 마련

\* (前) '통계자료의 보호' → (後) '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'

- 통계등록부 자료의 사용목적·사용방법 등에 대한 제한, 자료의 복제·폐기 등 조치 요청 및 조치 미흡시 자료의 제공 중지·제한 가능성 명시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활용 확대에 대응한 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 강화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 7. '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' 신설(제48조의2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**통계데이터센터(이하 '데이터센터')**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
- \* 통계청은 9개 지역(서울, 부산, 대전, 광주, 대구 등)에서 12개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중으로, 통계자료 제공, 자료 간 연계, 통계이용자 교육 등의 기능 수행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데이터센터는 출입 보안시설과 자료의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고 자료입수·관리 및 목록 공개, 이용자의 이용신청 및 장비 반출입 등에 대한 승인·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(제1항)
-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**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**를 하도록 규정(제2항)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통계데이터센터의 엄격한 데이터 보호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통계데이터 제공 및 교육·분석지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한 통계서비스 강화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 8. 통계작성 업무 등의 위임·위탁시 통계등록부 자료의 비밀보호 방안 마련(제50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37조제2항에 통계청장의 위임·위탁 사항에 **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, 통계데이터센터의 운영**에 관한 사항 신설
-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위임·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통계등록부 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임·위탁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**영 제50조(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)**를 개정하여 수탁기관의 준수사항\*을 명시
- \*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·제한, 통계등록부 자료의 파일의 복제·관리·판매 등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통계등록부 자료에 관한 업무 등의 위임·위탁시의 비밀보호 방안 마련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